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51
----------	-------

발의연월일 : 2025. 6. 24.

발 의 자 : 문진석 · 이연희 · 한정애
이건태 · 김교홍 · 강준현
이정문 · 박용갑 · 박정현
조인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교 등의 교량이나 철골구조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의 규모,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등을 심사하여 4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이나 증명을 하는 인증제도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24.2 규제개혁위원회).

이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지정취소 요건 강화 및 심사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

장에 양질의 철강구조물을 공급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 제59조, 제79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 제목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을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별로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을 “제작능력을 심사하여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이하 “공장등급”이라 한다)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능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공장을 이전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시설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제4항 후단 중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 정당한”을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으로, “이에 협조하여야”를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심사, 이전심사 또는 실태점검 결과 공장 등급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장등급의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와 정기심사, 이전심사,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 제목 “(공장인증의 취소 등)”을 “(공장등급 지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장인증을 받은”을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으로, “공장인증을 취소”를 “지정을 취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장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장인증”을 “공장등급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

2호)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공장인증”을 “공장등급의 지정”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8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

3. 제58조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지정을 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공장등급의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79조제4호 중 “공장인증”을 “공장등급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8조제2항에 따라 공장등급 지정의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신청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별로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 ① ----- ----- ----- 제작능력을 심사하여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이하 “공장등급”이라 한다)을 지정----- --. ②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능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공장을 이전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시설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현장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과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 그 요청에 따라야-----.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심사, 이전심사 또는 실태점검 결과 공장등급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장등급의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와 정기심사, 이전심사,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공장등급 지정의 취소 등) ① -----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경우
<신 설>

<신 설>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
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 지정을 취소-----.

---- 지정-----

----.

1. -----
---- 공장등급의 지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8조제2
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이
전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
월이 지난 경우

3. 제58조제3항에 따른 실태점
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58조제5항-----
--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지정을 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공장등급의 지정을 다
시 신청할 수 없다.

③ ----- 공장등급의 지
정 -----
-----.

제79조(수수료) -----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의2. (생략) 4. 제58조제1항에 따라 <u>공장인</u> <u>증을 신청하는 자</u> <u><신설></u>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 <u>공장등급</u> <u>의 지정</u>----- 5. 제58조제2항에 따라 <u>공장등</u> <u>급 지정의 정기심사 또는 이</u> <u>전심사를 신청하는 자</u>
---	---